

의안번호	2126264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4.01.23.
추계번호	24C00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3.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영유아의 외부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지원 가. 교통비 및 숙박비 나. 기타 필요한 비용 5.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 6.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7.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8.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와 연수경비 지원 (제2항) 국가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도서·벽지·농어촌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의무규정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제3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동 지역 보육교직원에게 도서·벽지·농어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52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①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② 교재·교구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③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영유아의 외부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지원(가. 교통비 및 숙박비, 나. 기타 필요한 비용), ⑤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 ⑥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⑦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⑧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와 연수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동 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금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지역별로 도서·벽지·농어촌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실시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현재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보육교사 1명 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¹⁾

- 추가인건비는 시설 내 평균 보육교사 인건비 월 지급액의 100%를 지급(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불포함)
 - 또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차량운영비’등이 지원되고 있음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월 11만원을 지급
 - (차량운영비) 농어촌 및 준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240만원(월 20만원)을 지원
 - 이외에도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하여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현행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대상 지역과 그 범위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1)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참조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